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77호 2023. 5. 10.(수)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797호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2
고성군 조례 제2798호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	7
고성군 조례 제2799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고성군 조례 제2800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4
고성군 조례 제2801호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	18
고성군 조례 제2802호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4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70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3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8
고성군 고시 제2023-71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22호선, 소로3-132호선) 결정(변 경) 및 지형도면 고시	31
고성군 고시 제2023-7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34
고성군 고시 제2023-82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37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5월 10일

고성군조례 제2797호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학술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학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학술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학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군정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확인·평가하고 각종 학술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이란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관계 법령에서 학술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재해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4. 시설물의 유지·위탁관리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학술용역

5. 2천만원 이하의 학술용역

6. 디자인, 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술용역

제4조(학술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 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존에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 2. 군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3. 학술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4. 학술용역의 기대효과 및 학술용역결과 종합 활용 계획

제5조(심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술용역 심의 요청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해야 한다.

- 1. 학술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2. 학술용역의 주요 내용
- 3. 학술용역의 기간과 수행방법
- 4. 학술용역비 산출 내역
- 5. 기존 학술용역과의 유사·중복성
- 6. 결과물의 활용계획과 기대 효과
- 7. 그 밖에 학술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 등 담당국장, 문화·환경 등 담당국장, 산업·건설 등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각종 학술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2.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학술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 3. 유사·연관 학술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 4.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후 군수가 따로 정한 학술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학술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학술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학술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학술용역의 심의 기준 등)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 요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 1. 학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중복성 등의 적합성
- 2. 학술용역의 방식 및 사업계획, 수행기간,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 3.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 4. 군의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9조(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학술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보고회 운영의 내실화) ① 학술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는 해당 학술용역 관련 업무에 정통한 국장·담당관·과장·담당 등 실무자와 군의회 의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학술용역 진행상황의 보고 및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 1. 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2.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3.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4. 용역 진행상 특이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5.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종료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 1. 연구 목표의 달성도(학술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 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 방법의 적정성 등)
- 3.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예산의 적정 사용 및 계획 일정 부합도 등)
- 4.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 5.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자문 등) ① 학술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또는 단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용역 결과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학술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학술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

점을 적시해야 한다.

제15조(의회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종료 후 고성군의회에 학술용역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 서면 보고로 할 수 있다.

제16조(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성과점검) 군수는 학술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학술용역성과물 관리) 군수는 학술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성과물을 보관·관리하고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학술용역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예산에 반영하는 학술용역부터 적용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5월 10일

고성군조례 제2798호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으로 이주한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이 안정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적응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성군에 정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읍·면·리 및 마을 등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을 말한다. 지역공동체의 범위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2. “전입주민”이란 오랫동안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에 거주하다가 군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입희망인”이란 오랫동안 군 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군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전입주민과 전입희망인이 군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기초로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전제로 할 것
2. 전입주민과 지역공동체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할 것
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

제4조(전입주민 등 지원) ① 군수는 전입주민이나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을 위한 상담 및 종합정보 제공 사업
2. 전입희망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3. 전입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4.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5.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6. 교육·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과 전입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7. 전입주민의 재능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8. 전입주민의 정착 협력에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전입주민이나 전입희망인이 아니더라도 제1항의 취지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주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2.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분야별 시책
3.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4.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 지원사업 평가 방안
5.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 조직 및 체계
6.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방안
7. 그 밖에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정착지원 등의 정보제공)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에게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은 군수에게 정보 제공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전입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 정도 등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 이장협의회 및 전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4. 정착지원센터 위탁 및 수탁기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홈페이지 등 구축·운영) 군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며 유관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고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군 대표누리집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정착지원센터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 정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3.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제11조에 따른 홈페이지 등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
7. 전입희망인에 대한 지역정보 제공 및 홍보
8. 그 밖에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

는 출연한 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5월 10일

고성군조례 제2799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
2.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사업
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선진지견학, 전국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사업
7.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 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 안의 주택전원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다만, 산지소유자인 임업인등이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고성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본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5월 10일

고성군조례 제2800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4조(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영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감사 관련 업무 부서의 장 및 관계 공무원
- 2. 군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영상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고성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5월 10일

고성군조례 제2801호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고성군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

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군수가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 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심사) ① 군수는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

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5월 10일

고성군조례 제2802호

고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4. “소규모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소규모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소규모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소규모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이하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라 한다)에 침수흔적이나 침수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소규모상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7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소규모상가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소규모상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성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

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고시 제2023 - 70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3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양기마을 진입도로 -

1. 경남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155-3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31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5. 4.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31호선) 결정(변경) 조서
: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3-131호선)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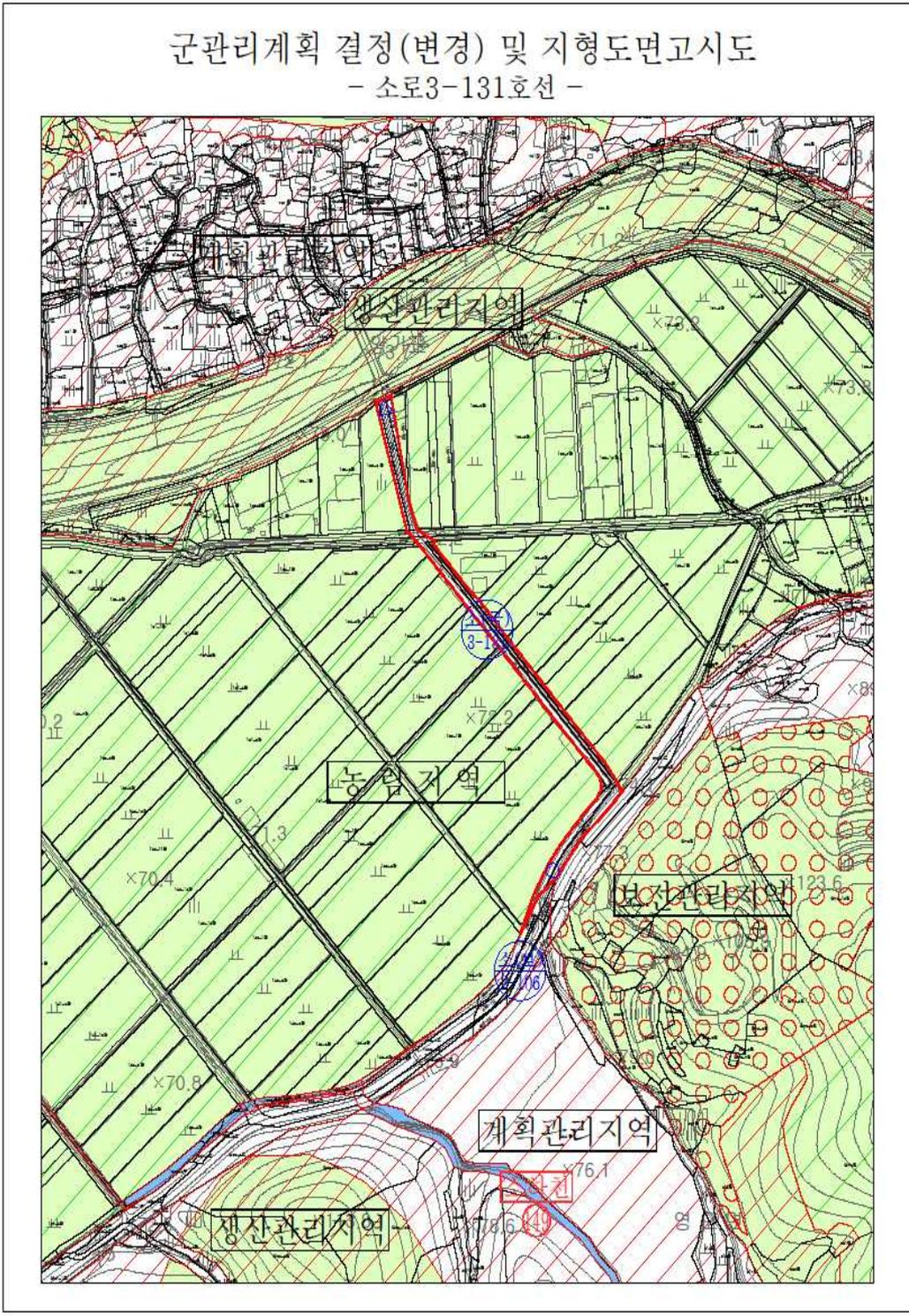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31	5	국지 도로	396	소로2-106 (영오면 양산리 583-8)	영오면 양산리 18	일반 도로	-		양기마을 진입도로

2.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소로3-131	○ 노선 신설 - 연장: 396m - 폭원: 5m	○ 고성군 영오면 양산리 155-3번지 일원 양기마을 진입도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군관리계획을 신규 결정(변경) 하고자 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소로3-131호선 -



고성군 고시 제2023 - 71호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22호선, 소로3-13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371-5번지 일원의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22호선, 소로3-132호선)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5. 4.

고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22호선, 소로3-132호선) 결정(변경) 조서
: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고성군관리계획(도로: 소로2-122호선, 소로3-132호선)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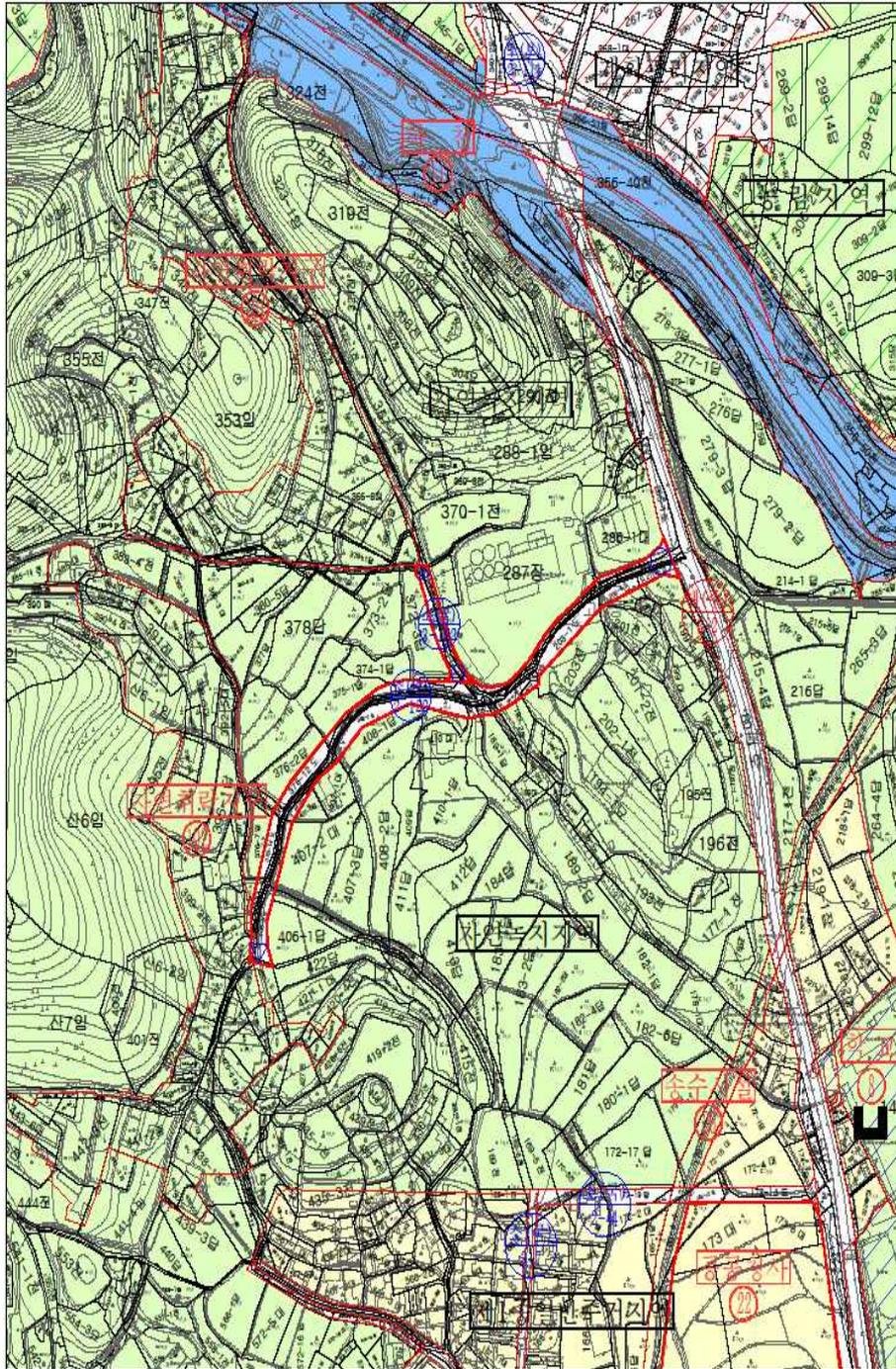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411	대로3-2	고성읍 기월리 406-3	일반 도로	-	고성군공고 제2013-706호 (2013.7.3.)	
변경	소로	2	122	8	국지 도로	411	대로3-2	고성읍 기월리 406-3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선형변경
신설	소로	3	132	6.5	국지 도로	71	소로2-122 (고성읍 기월리 371-5)	고성읍 기월리 656-13	일반 도로	-	-	

2.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로2-122	소로2-122	○ 일부구간 선형변경 -L=411m, B=8m	○ 소로3-132호선 신설에 따라 소로3-132호선 접속 부에 대하여 일부구간 선형변경
-	소로3-132	○ 노선 신설 -L=71m, B=6.5m	○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일원 사자골 도로의 안전 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 설(도로)을 신규 결정하고자 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소로2-122호선, 소로3-132호선 -



고성군 고시 제2023-7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4.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거류면 은월리 산11, 외1필지	거류면 거류로 281	2023.05.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거류면)을 이용하여 거류로로 명명	
2	고성읍 신월리 산126-4	신월로 221-83	2023.05.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여 신월로로 명명	
3	고성읍 교사리 736	상정대로 371	2023.05.04.	건물번호부여신청	고성군 상리면과 사천시 정동면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첫글자를 따서 상정대로라 명명	
4	고성읍 교사리 731	상정대로 373	2023.05.04.	건물번호부여신청	고성군 상리면과 사천시 정동면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첫글자를 따서 상정대로라 명명	
5	고성읍 서외리 249-10	남포로99번길 37	2023.05.04.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99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6	대가면 금산리 738-2 외 1필지	금산1길 53-19	2023.05.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 금산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고성군 고시 제2023-82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10.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영오면 오동리 423	영오면 오동2길 53	2023.05.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오면 오동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2	대가면 척정리 1242-2	대가면 척정2길 189-13	2023.05.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 척정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3	고성읍 기월리 90	고성읍 송학고분로 195	2023. 05. 10.	건물번호부여신청	문화재인 고성 송학동고분군으로 연결되는 길임을 반영	
4	삼산면 판곡리 430-13	삼산면 판곡2길 94	2023. 05. 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판곡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5	동해면 내곡리 1536-9	동해면 동해로 863	2023. 05. 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을 이용하여 동해로로 명명	
6	동해면 내산리 507-5	동해면 외산1길 26	2023.05.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7	영오면 오서리 257-2	영오면 오서2길 4	2023.05.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오면 오서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8	동해면 외곡리 174-6	동해면 외곡4길 138-1	2023.05.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곡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9	거류면 거산리 158-3	거류면 동해로 506-14	2023.05.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을 이용하여 동해로로 명명	
10	동해면 외산리 산150-11	동해면 외산1길 138-25	2023.05.10.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외산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건물등의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효력일자	폐지 사유	비고
1	고성읍	송학고분로 191	2023.05.10.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2	영오면	영오면 오서2길 4	2023.05.10.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